

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 2 . 10 평창군수(농업경영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00. 2. 10

다. 상정일자 : 제7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조례특위(2000.2.10)
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업경영과장 백순규)

가. 제 안 이 유

-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양곡가공업의 시설양도 임대·변경 또는 영업폐지·휴업신고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평창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 요 내 용

- 시설의 양도·임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삭제(안 제4조)
- 제분업의 폐지·휴업신고 사항 삭제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양곡관리법의 개정(1999. 1.21, 법률 제5665호)으로 양곡매매업 신고제·양곡매도 명령제, 가격안정 기금운영제등이 폐지되는 한편, 양곡가공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등 현행제도의

